

#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안 번호	제3511호
----------	--------

제출년월일 2024. 8. .  
제출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가.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운영 관련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업 관련기관 유치에 따라,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내 일부 공간을 입주기관 공간마련 및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김포산업지원센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나. 대상시설 :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22)

다. 사용기간 : 2024. 10. 1. ~ 2029. 9. 30.(5년)

라. 사용면적 : 1,632.65㎡ (김포산업지원센터 162.32㎡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470.33㎡)

마. 이용내용

### ① 김포산업지원센터

- 김포산업지원센터 사무공간 및 센터장실 공간 마련
-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운영
- 지역산업·기업지원 정책연구 및 김포시 특화사업 육성·지원

### ②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디지털산업본부 산업지능화기술센터 설치
- 제품시험분석 및 인증(KC인증, IDX시험, 소프트웨어·AI·드론 국제 표준화 등)
- AI 시스템 신뢰성 분야 연구 및 적합성 평가, 디지털 전환 기술지원 등
- RFID, 스마트 공장, UAM 등 국책과제 연구개발 및 사업

바. 이용현황

구분	이용시설	면적(㎡)	비고
합계		1,632.65	
김포산업지원센터	5층(사무실, 센터장실(2실))	162.3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계	1,470.33	
	1층(민원접견실)	42.31	
	3층(사무실, 시험인증실 등)	659.52	
	4층(디지털 국책사업 연구공간)	768.5	

### 3. 관계법령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4호 및 제20호
-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 및 제4호
-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9호
- 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 4. 예산수반사항

- 가. 센터 내 김포산업지원센터 공간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진행  
(2024년도 본예산 ‘제조융합혁신센터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 사용)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 등 관련비용 기관 자부담

### 5.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소관 실·과·소		기업지원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기업지원과장 최재욱
	팀장 직위·성명	기업지원팀장 하세진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이찬호(☎228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의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용허가 등) ② 사용허가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